

『환경분쟁조정제도』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환경분쟁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둘러싸고 환경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환경분쟁은 일반적인 법적 분쟁에 비해 그 원인이 다양하고, 피해가 광범위하며, 또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환경분쟁의 발생원인 및 분야가 수질, 대기,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먼지, 폐기물, 토양, 햇빛차단, 방사선, 자연환경, 지하수 등 다양하고,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넓고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확정·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피해는 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과실과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분쟁의 해결

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가해자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대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반 시민으로 경쟁력이 약하다. 이러한 환경분쟁 당사간의 현저한 경제적 불균형은 결국 효과적인 환경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

예컨대, 1972년 진해화학의 공해로 김 약식장을 망친 어민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4년만인 1986년에야 비로소 최종판결을 받았다. 강자인 피고측이 고의적으로 소송 지연작전을 펼으로써 원고인 어민들이 재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중에 포기하였으며, 오래 끄는 소송 중에 피해어민 2명이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는 재판을 통한 환경피해 구제가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다.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당사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

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신속·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환경정책기본법 29조)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30조)는데 근거한 것으로 환경분쟁을 정식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분쟁해결의 방식에 있어 사법기관의 공평타당성과 행정기관의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확립된 제도로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피해범위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발생 등의 분쟁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장기간 경과에 따른 원인상의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과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당시의 오염현상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피해 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출한 어떠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에는 알선·조정·재정의 3종류가 있는데, 알선은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으로 알선위원이 분쟁당사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조정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재판에 결정하는 준하는 절차이다.

환경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중앙환경조정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업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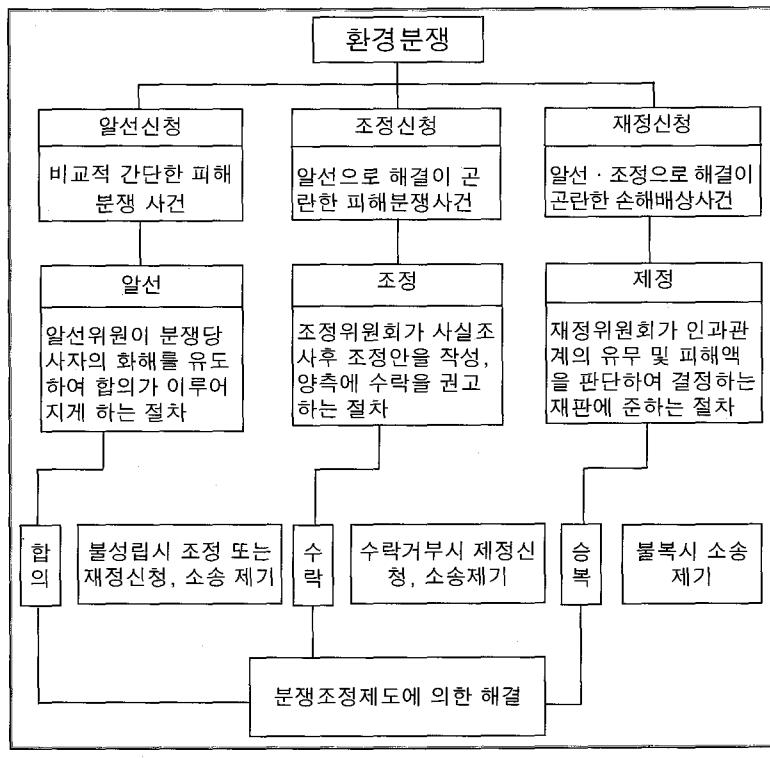
현행법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조정절차만 수행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이나
비교적 단순 경
미하고 규모가
작은 1억 미만
의 소액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환경분쟁조정
의 신청은 당사
자(피해자, 가해
자)의 한쪽, 또
는 쌍방으로부
터 신청서가 제
출됨에 따라 개
시된다. 신청시
에는 환경피해
청구금액에 따
라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한다. 신
청이 되면 분쟁
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보 조치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재정위원과 함께 사무국 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하게 된다.

환경부의 '98 연차보고를 통해 그 동안의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98년 말 현재 총 252건의 조정사건이 신청되었는데 연도별로 93년 43건, 95년 50건, 96년 50건, 97년 47건, 98년 62건이 신청되어 해마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염원인별로는 총 252건의 조정신청사건 중 소음·진동분야가 183건(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분야 36건(14%), 수질분야 24건(10%), 해양분야 9건(3%)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총 252건 중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33건(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



물 피해 47건(19%), 농산물 피해 32건(13%), 수산물 피해 24건(9%)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건축물 관련 피해의 경우는 서울 등 도심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거주민들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가 대부분이다.

조정신청사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252건 중 서울지역이 76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지역이 53건으로 23%로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비율이 53%를 점하고 있다.

한편, 조정사건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조정을 시작한 '92년도의 승복비율은 25%였으며, 93년에는 48%, 매년 승복비율이 상향되어 '97, '98년에는 각각 89%, 87%로 증가되었다.

위 분쟁조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괜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환경분쟁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자료 : 환경공업신문>